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13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 의 자 : 임미애 · 박해철 · 전진숙
김한규 · 허성무 · 문대림
김 윤 · 김성환 · 채현일
전종덕 · 윤종오 · 이연희
이재강 · 임호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난민이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외국인인 모가 한국인 부와의 사이에서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부모의 본국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권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출생신고는 가능하게 되더라도 자녀가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행법에 따르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부모가 불법체류 중이라면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아닐 가능성도 높음.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즉,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직무 중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증가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4, 제31조제3항, 제78조제1항제3호, 제84조제1항·제2항 및 제8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외국인에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부여기준과 절차,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 및 갱신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23조에”를 “제10조의4 또는 제23조에”로 한다.

제78조제1항제3호 중 “조사”를 “조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에 따른 외국인의 출생등록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8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접수, 등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외국인의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6조제2항 중 “제84조제2항에”를 “제84조제3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4(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외국인에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부여기준과 절차,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 및 갱신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1조(외국인등록) ① · ② (생략) ③ <u>제23조에</u>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31조(외국인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0조의4 또는 제23조에</u>-----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조사.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에
따른 외국인의 출생등록 업무
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제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통보의무) ① -----

----- . <단서 삭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
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
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
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
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② (생 략)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생 략) ② 교도소 · 소년교도소 · 구치	<u>경우</u> 4. 「<u>청소년복지 지원법</u>」 제29조제1항에 따른 <u>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 · 긴급구조 · 자활 ·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u> 5.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신고접수, 등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외국인의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u>제84조제2항에</u> 따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 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 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 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 여야 한다.	----- ----- --- <u>제84조제3항에</u> ----- ----- ----- ----- ----- ----- -----.
---	---